

예 산 총 칙

2015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964,038,935	58,921,168
일반회계	1,639,784,029	49,193,521
특별회계	324,254,906	9,727,647
공기업특별회계	242,276,505	7,268,29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5,669,053	3,470,072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6,607,452	3,798,224
기타특별회계	81,978,401	2,459,352
교통사업 특별회계	25,218,282	756,548
장사시설특별회계	291,788	8,75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420,314	42,609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2,930,129	87,904
대지보상 특별회계	1,617,000	48,510
기반시설 특별회계	401,201	12,036
수질개선 특별회계	50,099,687	1,502,99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9,470,851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8,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